

## 안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2022. 6. 27. 조례 제34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안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관리부서가 없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부지 재산관리관이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별·연령·장애정도 등에 따른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 장소
2.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기존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 및 관리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충분한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3.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평탄한 곳에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는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의 적정거리를 두어 설치해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내문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즉시 재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설치·철거)를 총괄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이 조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에 등록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안내문(제8조 관련)

<b>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b>	
관리번호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안 양 시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제10조 관련)

관리 번호	0000과 -
----------	---------

시 설 명							
위 치	(필요시 위치도 첨부)						
설치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사 업 비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설 치 현 황	[전경사진]						
	번호	기구명	관리번호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설치년월

안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뒷면)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직급	성명	
관 리 현 황				